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정원 책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신종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연구관 1명) 등 21개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4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3명, 8급 7명, 9급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1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감정인력 1명(연구관 1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백업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화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 한국미술 성장을 위한 국제업무 전담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에 생산수입판매신

고 심사요건 강화에 따른 제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라. 보건복지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 확대에 따른 심리지원 전문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춘천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인력 1명(7급 1명),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의료시범사업 운영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철새연구센터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화학물질안전원에 24시간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인력 4명(전문경력관 나군 4명)을 각각 증원함.

바. 해양수산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사. 관세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X-Ray 판독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

아. 소방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소방연구원에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화재실험동 및 첨단장비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자.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 수도권문화유산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 및 전북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차.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 사료기술 개발 연구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함.

카. 산림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타.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제주공항 항공사고 예방 기상관측장비 운영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8명”을 “459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7명”을 “33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0명”을 “101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57명”을 “15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6명”을 “21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6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30명”을 “132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5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2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5명”을 “187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6명”을 “358명”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20명”으로 하고, 같은 표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44명”을 “148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3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6명”을 “5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소방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2명”을 “46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95명”을 “2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3명”을 “32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9명”을 “1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2026년 3월 25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2026년 2월 21일”을 “2027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종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소방연구원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

6년 3월 24일

2. 별표 1의2의 개정규정(화학물질안전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7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503